

검 토 보 고 서

2019. 3. 6 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9. 2. 22.
- 회부일 : 2019. 2. 25. (의안번호 : 19 - 19)

2. 개정이유

-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근거 신설(안 제18조)
 - 심의사항: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,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조직 진단 및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
 - 위원회 구성: 위원장(부구청장) 포함 10명 이내
 - 기 타: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, 위원 수당 지급 근거 등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9조
(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

5. 검토보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위원회 심의사항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,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, 조직진단 및 그 밖에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며,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하며, 기타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, 위원 수당 지급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검토의견으로는
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,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
- 관련 대통령령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9조(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)의 기준을 검토한 결과 조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으므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